

Ⅱ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'96. 7. 1.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.

□ 주요내용

- 도로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
동법시행령 제26조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파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은 현행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인 별표1중 소액 점용료 산정금액 500원 미만을 5,000원미만까지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사안과
-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단위미만은 절사토록 하고,
- 별표1의 2항중 상·하수도관, 전기, 통신, 가스, 송유, 송열관등 점용물의 규격인 0.1m이하부터 직경 1m초과까지 7단계로 구분 하던 것을 9단계로 기타의 관의 경우도 7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9단계로 세분화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명시하였음.

□ 검토의견

- '96. 7. 1.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하여 정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내용은 상위관계법령에 위반·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며,
- 다만 조례내용중 제5조1항1호 내지 3호와 2항3호의 내용중 “내무부령”으로 표기된 것을 '98. 2. 28.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동법 부칙제3조 규정에 의거 “행정자치부령”으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금번 조례개정시 자구수정이 요구됨.
- 참고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은 540건에 1억8천여만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으며,
- 소액 점용료 산정금액 500원미만을 5,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혜택을 입게될 대상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38건에 110,490원으로 징수액 대비 지극히 미미하다고 보며,
- 또한 전기, 통신, 가스, 기타의 관 등의 점용물에 대한 규격을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 한 주된 내용은 1.0m 초과인 규격을 추가로 규정한 것으로 '98. 3월 현재 적용대상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및 세수증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,
향후 전기, 통신시설 및 도시가스관로 매설등으로 인한 적용 대상시설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금번 조례개정은 다소 시기가 일실되기는 하였지만 시기일실에 따른 피해가 없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